

[별표 3] <개정 2023. 4. 7.>

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구 분	사용목적	사용기준	사용료(기준액)	비고
대공연장	공연 및 그 밖의 행사	오 전 (9:00~13:00)	200,000원	사용기준 마지막 시간은 공연, 행사 종료 후 마지막 정리(시간)까지 시간임.
		오 후 (13:00~18:00)	300,000원	
		야 간 (18:00~23:00)	350,000원	
		1일 (12시간)	700,000원	
		토·일요일, 공휴일	평일의 30퍼센트 할증	
소극장 (강북진달래홀)	공연	오 전 (9:00~13:00)	100,000원	
		오 후 (13:00~18:00)	150,000원	
		야 간 (18:00~22:00)	200,000원	
		09시 이전(1시간) 22시 이후(1시간) (사전협의)	50,000원	
		토·일요일, 공휴일	평일의 30퍼센트 할증	
행복실	결혼식	1회 1시간	100,000원	
		토·일요일, 공휴일	할증 없음	
	일반행사	1회 3시간	100,000원	
		토·일요일, 공휴일	평일의 30퍼센트 할증	
전시실	미술, 사진, 공예품 등 전시	1일 (9:00~18:00)	80,000원	
		토·일요일, 공휴일	평일의 30퍼센트 할증	
세미나실, 회의실	세미나, 회의, 모임 등	1회 3시간	30,000원	

- 비 고 -

1.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2.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은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공연 및 행사 준비를 위한 전날의 야간(철야 포함)작업은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 소극장 및 전시실은 공연, 전시에 한하며, 대관심의를 거쳐 대관함.

[별표 4] <개정 2023. 4. 7.>

부속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구 분		사용시간	사 용 료	구 분	사용시간	사 용 료
그랜드 피아노	야마하	1회	70,000원	핀 스포트	1대	30,000원
	삼익		30,000원			
유선 마이크		1회	3개 무료 (추가 1개당 5,000원)	포그 머신	1회/1대	10,000원
무선 핀 마이크		1회	20,000/1개	드라이아이스	1회/1대	10,000원
콘덴서 마이크		1회	10,000원/1개	PAR64	1대	3,000원
녹 음 료		1회	시디(CD) 30,000원/ 카세트 20,000원	PAR46(8세트)	1대	5,000원
영 사 기		1회/3시간	20,000원	스트로버	1대	10,000원
빔 프로젝트		1회	20,000원	무빙 라이트	1대	50,000원
음향 반사판		1회	50,000원	무빙 콘솔	1대	100,000원
덧 마 루		1회	30,000원	조명 디자인	1회	500,000원
스 크 린		1회	30,000원	냉난방기	1회/1시간	시 가
합창단상		1회	30,000원			

- 비 고 -

1. 행복실, 세미나실, 회의실 이용 시 부속시설 사용료는 무료임.

(냉난방비는 제외)

2.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3. 무대장치 및 조명연습은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4. 냉난방비는 연료시가에 따라 별도 고시함.

※ 소극장 및 전시실 부속시설 사용료는 별표 5에 따로 정함.

[별표 5] <신설 2023. 4. 7.>

부속시설 사용료(소극장 및 전시설) (제7조 관련)

구 분	사용시간	사용료	비 고
음향장비 무선마이크	1회/대	5,000원	핀마이크/건전지 공연단체 부담
영상 빔프로젝터(고정식) 전동스크린	1회	50,000원	운용인력은 공연단체가 운영
조명장비 Moving light	1회/대	5,000원	
조명장비 Moving Wash	1회/대	5,000원	
녹음 및 녹화	1회	10,000원	
냉난방기	1시간	20,000원	

- 비 고 -

1. 전시설 이용 시 부속시설 사용료는 무료임.(냉난방비는 제외)
2.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3.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은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4. 공연 및 행사 준비를 위한 전날의 야간(철야 포함)작업은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